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의 규정 및  
계획 반영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9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의 규정 및 무형유산기본<br>계획 반영(안 제2조제13호,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 2 |
| 2.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 수립 근거 마련<br>(안 제48조의2 신설) .....                         | 8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22.

다. 회 부 일 : 2026. 7.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의 규정 및 무형유산기본계획 반영(안 제2조제13호,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개정안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정의에 규정하고 이를 무형유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2.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 12. (현행과 같음)<br>13.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
|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6. (생략)</p> <p>② ~ ④ (생략)</p> |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u></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안 제2조제13호는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1)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2)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존·관리·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인용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을 ①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등을 구현하는 기술 ②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③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④「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sup>3)</sup>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⑤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인프라 및 요소기술을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로 규정하여 핵심 인공지능 자체와 이를 구현하거나 활용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

---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체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과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능정보화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제24조<sup>4)</sup>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sup>5)</sup>는 무형유산을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sup>6)</sup>는 전통 공연·예술, 전통 기술, 전통지식 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무형유산은 사람과 공동체의 지식·기술 및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고 전승되며, 특히 전통

---

4)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공연·예술과 전통기술은 전승자의 기량과 경험에 의존하고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학습과 반복적인 실습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음.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5.9세<sup>7)</sup>이고, 전승자의 사망 등으로 전승이 어려워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은 4개<sup>8)</sup>이며, 생활여건의 변화로 대중성과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여 전승단절이 우려되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은 25개<sup>9)</sup>에 달하는바, 이러한 현황은 전승자의 고령화와 활동 중단, 사회적 수요 부족 등으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동작 디지털화 등의 기술이 무형유산에 내재된 지식의 발견과 데이터 분석, 기록·관리 및 전승·교육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바<sup>10)</sup>, 무형유산의 특성과 종목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능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7) 참고자료 1

8) 참고자료 2

9) 참고자료 3

10) 안재홍, 「디지털 매체 기반의 무형유산 기록과 향유를 위한 동작 디지털화 기술의 현황 및 전망」, 『무형유산』 제15호, 국립무형유산원, 2023, p.53

그런데 현행 「무형유산법」 제48조제3항<sup>11)</sup> 및 제49조제1항<sup>12)</sup>에서 무형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무형유산의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무형유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무형유산 보전·관리·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안 제2조제13호는 ‘인공지능기술’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정의한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호를 함께 인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2.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안 제48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48조의2(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li> <li>2.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표준화</li> <li>3.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가공</li> <li>4.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li> <li>5. 그 밖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관리·전승·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지능정보</p> |

| 현행 | 개정안                                      |
|----|------------------------------------------|
|    | <u>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 |

안 제48조의2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활용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와 전승 단절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 및 활용을 고도화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무형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보이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
|--------------|
| 문의처          |
| 02)6788-5380 |

# 참고 1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연령

|    | 종목         | 성명  | 연령 |
|----|------------|-----|----|
| 1  | 양주별산대놀이    | 김순희 | 91 |
| 2  | 갯일         | 정춘모 | 86 |
| 3  | 갯일         | 박창영 | 83 |
| 4  | 갯일         | 장순자 | 86 |
| 5  | 갯일         | 강순자 | 80 |
| 6  | 판소리        | 송순섭 | 87 |
| 7  | 판소리        | 김청만 | 80 |
| 8  | 판소리        | 신영희 | 84 |
| 9  | 판소리        | 이난초 | 65 |
| 10 | 판소리        | 정순임 | 84 |
| 11 | 판소리        | 김영자 | 75 |
| 12 | 판소리        | 정회석 | 63 |
| 13 | 판소리        | 김수연 | 78 |
| 14 | 판소리        | 김일구 | 86 |
| 15 | 판소리        | 윤진철 | 61 |
| 16 | 판소리        | 박시양 | 64 |
| 17 | 판소리        | 안숙선 | 77 |
| 18 | 통영오광대      | 김홍중 | 77 |
| 19 | 고성오광대      | 이윤석 | 76 |
| 20 | 강강술래       | 박용순 | 88 |
| 21 | 강강술래       | 김종심 | 80 |
| 22 | 강강술래       | 박종숙 | 72 |
| 23 | 강강술래       | 차영순 | 73 |
| 24 | 은산별신제      | 송병일 | 76 |
| 25 | 나전장        | 이형만 | 80 |
| 26 | 나전장        | 박재성 | 73 |
| 27 | 나전장        | 장철영 | 65 |
| 28 | 나전장        | 최상훈 | 72 |
| 29 | 진주삼천포농악    | 김선옥 | 74 |
| 30 | 평택농악       | 김용래 | 85 |
| 31 | 임실필봉농악     | 양진성 | 60 |
| 32 | 진주검무       | 김태연 | 78 |
| 33 | 진주검무       | 유영희 | 79 |
| 34 | 강릉단오제      | 김종균 | 84 |
| 35 | 강릉단오제      | 빈순애 | 67 |
| 36 | 강릉단오제      | 조규돈 | 79 |
| 37 | 한산모시짜기     | 방연옥 | 79 |
| 38 | 거문고산조      | 김영재 | 79 |
| 39 | 거문고산조      | 이재화 | 73 |
| 40 | 봉산탈춤       | 김애선 | 89 |
| 41 | 대금정악       | 임진옥 | 72 |
| 42 | 승전무        | 엄옥자 | 83 |
| 43 | 승전무        | 한정자 | 84 |
| 44 | 매듭장        | 김혜순 | 82 |
| 45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이영희 | 88 |
| 46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강정숙 | 74 |

|    | 종목         | 성명  | 연령 |
|----|------------|-----|----|
| 47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강정열 | 76 |
| 48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문재숙 | 73 |
| 49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양승희 | 78 |
| 50 | 가야금산조 및 병창 | 정옥순 | 68 |
| 51 | 안동차전놀이     | 이재춘 | 85 |
| 52 | 승무         | 채상목 | 82 |
| 53 | 서도소리       | 김광숙 | 73 |
| 54 | 서도소리       | 이춘목 | 73 |
| 55 | 서도소리       | 김경배 | 67 |
| 56 | 가곡         | 김경배 | 86 |
| 57 | 가곡         | 김영기 | 68 |
| 58 | 가곡         | 조순자 | 82 |
| 59 | 가곡         | 이동규 | 79 |
| 60 | 낙죽장        | 김기찬 | 71 |
| 61 | 강령탈춤       | 김정순 | 94 |
| 62 | 강령탈춤       | 송용태 | 74 |
| 63 | 조각장        | 곽홍찬 | 70 |
| 64 | 조각장        | 김용운 | 76 |
| 65 | 조선왕조궁중음식   | 정길자 | 78 |
| 66 | 조선왕조궁중음식   | 한복려 | 79 |
| 67 | 처용무        | 김중섭 | 86 |
| 68 | 학연화대합설무    | 이흥구 | 86 |
| 69 | 가사         | 이준아 | 66 |
| 70 | 악기장        | 고흥곤 | 75 |
| 71 | 악기장        | 이정기 | 69 |
| 72 | 악기장        | 윤종국 | 65 |
| 73 | 악기장        | 임선빈 | 76 |
| 74 | 악기장        | 고수환 | 76 |
| 75 | 악기장        | 표태선 | 65 |
| 76 | 악기장        | 조준석 | 64 |
| 77 | 악기장        | 김종민 | 58 |
| 78 | 수영야류       | 김성울 | 80 |
| 79 | 대금산조       | 이생강 | 84 |
| 80 | 피리정악 및 대취타 | 정재국 | 84 |
| 81 | 궁시장        | 박호준 | 82 |
| 82 | 궁시장        | 권영학 | 83 |
| 83 | 궁시장        | 김성락 | 57 |
| 84 | 궁시장        | 김윤경 | 55 |
| 85 | 궁시장        | 유세현 | 62 |
| 86 | 단청장        | 유병순 | 76 |
| 87 | 송파산대놀이     | 함완식 | 70 |
| 88 | 남도들노래      | 박동매 | 66 |
| 89 | 남도들노래      | 이영자 | 83 |
| 90 | 채상장        | 서신정 | 66 |
| 91 | 소목장        | 박명배 | 76 |
| 92 | 소목장        | 소병진 | 74 |
| 93 | 소목장        | 엄태조 | 82 |
| 94 | 종묘제례       | 이기전 | 92 |
| 95 | 경기민요       | 이춘희 | 79 |
| 96 | 경기민요       | 김혜란 | 75 |
| 97 | 경기민요       | 이호연 | 70 |

|     | 종목       | 성명  | 연령 |
|-----|----------|-----|----|
| 98  | 줄타기      | 김대균 | 59 |
| 99  | 장도장      | 박종균 | 64 |
| 100 | 장도장      | 한상봉 | 66 |
| 101 | 은울탈춤     | 박일홍 | 69 |
| 102 | 은울탈춤     | 차부회 | 67 |
| 103 | 좌수영어방놀이  | 김태룡 | 93 |
| 104 | 두석장      | 김극천 | 75 |
| 105 | 두석장      | 박문열 | 76 |
| 106 | 망건장      | 강전향 | 83 |
| 107 | 망건장      | 전영인 | 57 |
| 108 | 탕건장      | 김혜정 | 80 |
| 109 | 하회별신굿탈놀이 | 이상호 | 81 |
| 110 | 하회별신굿탈놀이 | 김춘택 | 76 |
| 111 | 하회별신굿탈놀이 | 임형규 | 72 |
| 112 | 진도씻김굿    | 박병원 | 81 |
| 113 | 가산오광대    | 한우성 | 90 |
| 114 | 대목장      | 최기영 | 81 |
| 115 | 대목장      | 김영성 | 69 |
| 116 | 대목장      | 이광복 | 66 |
| 117 | 대목장      | 조재량 | 60 |
| 118 | 기지사줄다리기  | 구자동 | 82 |
| 119 | 택견       | 정경화 | 72 |
| 120 | 유기장      | 김수영 | 77 |
| 121 | 유기장      | 이형근 | 68 |
| 122 | 입사장      | 홍정실 | 79 |
| 123 | 입사장      | 승경란 | 65 |
| 124 | 발탈       | 박정임 | 87 |
| 125 | 발탈       | 조영숙 | 92 |
| 126 | 자수장      | 최유현 | 90 |
| 127 | 자수장      | 김영이 | 73 |
| 128 | 자수장      | 김영희 | 76 |
| 129 | 위도띠뽀놀이   | 김상원 | 93 |
| 130 | 위도띠뽀놀이   | 이종순 | 90 |
| 131 | 남해안별신굿   | 정영만 | 70 |
| 132 | 예천통명농요   | 이상휴 | 93 |
| 133 | 경주교동법주   | 최경  | 82 |
| 134 | 침선장      | 구혜자 | 84 |
| 135 | 제와장      | 김창대 | 54 |
| 136 | 태평무      | 박재희 | 76 |
| 137 | 태평무      | 양성옥 | 72 |
| 138 | 전통장      | 김동학 | 95 |
| 139 | 웅기장      | 정윤석 | 84 |
| 140 | 웅기장      | 방춘웅 | 83 |
| 141 | 웅기장      | 이학수 | 71 |
| 142 | 살풀이춤     | 김운선 | 67 |
| 143 | 살풀이춤     | 양길순 | 72 |
| 144 | 소반장      | 김춘식 | 90 |
| 145 | 옥장       | 장주원 | 89 |
| 146 | 옥장       | 김영희 | 67 |
| 147 | 금속활자장    | 임인호 | 62 |
| 148 | 완초장      | 유선옥 | 72 |

|     | 종목     | 성명  | 연령 |
|-----|--------|-----|----|
| 149 | 서울 새남굿 | 이상순 | 76 |
| 150 | 사기장    | 김정옥 | 84 |
| 151 | 각자장    | 김각한 | 69 |
| 152 | 목조각장   | 박찬수 | 77 |
| 153 | 목조각장   | 전기만 | 97 |
| 154 | 화각장    | 이재만 | 73 |
| 155 | 화각장    | 한기덕 | 52 |
| 156 | 윤도장    | 김희수 | 64 |
| 157 | 사직대제   | 이건웅 | 85 |
| 158 | 주철장    | 원광식 | 84 |
| 159 | 칠장     | 정수화 | 72 |
| 160 | 염장     | 조대용 | 76 |
| 161 | 염색장    | 정관채 | 67 |
| 162 | 화혜장    | 황해봉 | 74 |
| 163 | 한지장    | 홍춘수 | 84 |
| 164 | 한지장    | 김삼식 | 80 |
| 165 | 한지장    | 신현세 | 79 |
| 166 | 한지장    | 안치용 | 67 |
| 167 | 불화장    | 임석환 | 78 |
| 168 | 금박장    | 김기호 | 58 |
| 169 | 석장     | 이재순 | 70 |
| 170 | 번와장    | 이근복 | 76 |
| 171 | 궁중채화   | 최성우 | 66 |
| 172 | 선자장    | 김동식 | 83 |
| 173 | 낙화장    | 김영조 | 73 |
| 174 | 사경장    | 김경호 | 63 |

## 참고 2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현황(전승현황 포함)

|   | 종목명<br>(긴급 지정일)              | 보유자<br>(인정일)       | 전승교육사<br>(인정일)      | 이수자(명) |
|---|------------------------------|--------------------|---------------------|--------|
| 1 | 나주의 셋골나이<br>(2023.7.1.)      | -                  | -                   | 3명     |
| 2 | 바디장<br>(2023.7.1.)           | -                  | -                   | 1명     |
| 3 | 백동연죽장<br>(2023.7.1.)         | -                  | 황기조<br>(2004.3.20.) | 5명     |
| 4 | 악기장(편종·편경 제작)<br>(2023.7.1.) | 김종민<br>(2026.2.2.) | -                   | -      |

### 참고 3

###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현황

○ < 전승취약종목 / 2020.4.1. ~ 2023.3.31.>

| 전통기술(20종목)                                                                                                           | 전통공연·예술(5종목)          |
|----------------------------------------------------------------------------------------------------------------------|-----------------------|
| 갯일,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섷골나이,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바디장, 전통장, 배첩장, 화각장, 윤도장, 선자장, 낙화장, 사경장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

○ < 전승취약종목 / 2023.4.1. ~ 2026.3.31.>

| 전통기술(20종목)                                                                                                           | 전통공연·예술(5종목)          |
|----------------------------------------------------------------------------------------------------------------------|-----------------------|
| 갯일,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섷골나이,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바디장, 전통장, 배첩장, 화각장, 윤도장, 선자장, 낙화장, 사경장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

○ < 전승취약종목 / 2026.4.1. ~ 2029.3.31.>

| 전통기술(20종목)                                                                                                         | 전통공연·예술(5종목)          |
|--------------------------------------------------------------------------------------------------------------------|-----------------------|
| 갯일, 나주의섷골나이, 낙죽장, 조각장,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채상장, 장도장, 두석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바디장, 전통장, 금속활자장, 화각장, 윤도장, 염장, 선자장, 낙화장, 사경장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